

제4절 공공시설

4.1 공공청사

4.1.1 시설의 종류(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

- ①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②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 ③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 ④ 포괄용도부여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과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4.1.2 설치기준

- ①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고려
- ②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고려
- ③ 교통이 번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 고려
- ④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 분산형으로 할 것
- ⑤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청사의 배치상황을 고려
- ⑥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
- ⑦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4.2 학교(초·중·고)

4.2.1 고려사항(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9조)

- ①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 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 ②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 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 유지
- ③ 급경사지·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④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해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⑤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 ⑥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⑦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 ⑧ 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주변에 적정규모의 옥외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⑨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2.2 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①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가능
- ②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
- ③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가구당 인구수·진학률·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결정
- ④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
- ⑤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4.3 종교시설

- ① 건축물의 용도분류상(건축법시행령 별표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유사한 것)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잡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종교집회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 ② 일반적 계획규모를 준거로 종교인구, 교세등을 감안하되 사업지구내 소재한 종교시설의 대체시설일 경우 기존면적을 고려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실수요용은 시설의 기능적 합리성 등이 추구될수 있고 재정적 부담능력에 부합되어 분양의 활성화가 도모될수 있도록 적정규모 확보.
- ③ 타종, 옥외 확성장치 등 생활환경측면에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를 선정
- ④ 가능한 한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게 하여 통행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⑤ 단지내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단지내 도로변에 배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는 당해 시설의 통행상 지장이 없고, 소화 피난 등 기타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
- ⑥ 중·대규모 종교시설은 근린주구 단위시설인 근린공원, 학교등과 인접배치한다.
- ⑦ 소규모 종교시설은 유치원용지나 근린생활시설내에도 입지가능함을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